

함께 알아보는

주민자치회



주민자치란?

근린지역을 단위로 지역적 사무 및 문제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조직화를 통해 그들의 의사에 기초하고 자주적으로 처리 및 해결되는 것을 의미

주민자치회란?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주민통합 및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에 설치·운영되는 대표적 주민조직체

주민자치회의 필요성

1.



근린 수준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협력적 거버넌스는 참여민주주의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과정으로서 강조 되고 있음

2.



지방자치의 중심축 변화에 따른 대응

기관 중심의 단체자치에서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로 지방자치의 중심축이 변하고 있음

3.



읍면동 중심 행정서비스 실행과 지방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읍·면·동 주민자치의 실질화를 통하여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주민자치조직이 필요함

4.



지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주민자치의 구현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들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5.



주민권력 차원의 민주적 권한을 부여받는 주체로서 주민자치회 위상 확보

지역공동체, 주민단체, 시민조직 등 다양한 지역사회 주민조직에 대하여 지역사회내 의사결정과 관련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해소하는 조직으로 주요 주민자치회의 위상이 필요함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현황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중

“제29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시범실시중

1단계

[2013.7 ~ 2014.12]

전국 31개 읍면동에서 실시

2단계

[2015.10 ~ 2017.6]

18개 읍면동 추가, 총 49개소 읍면동에서 실시

3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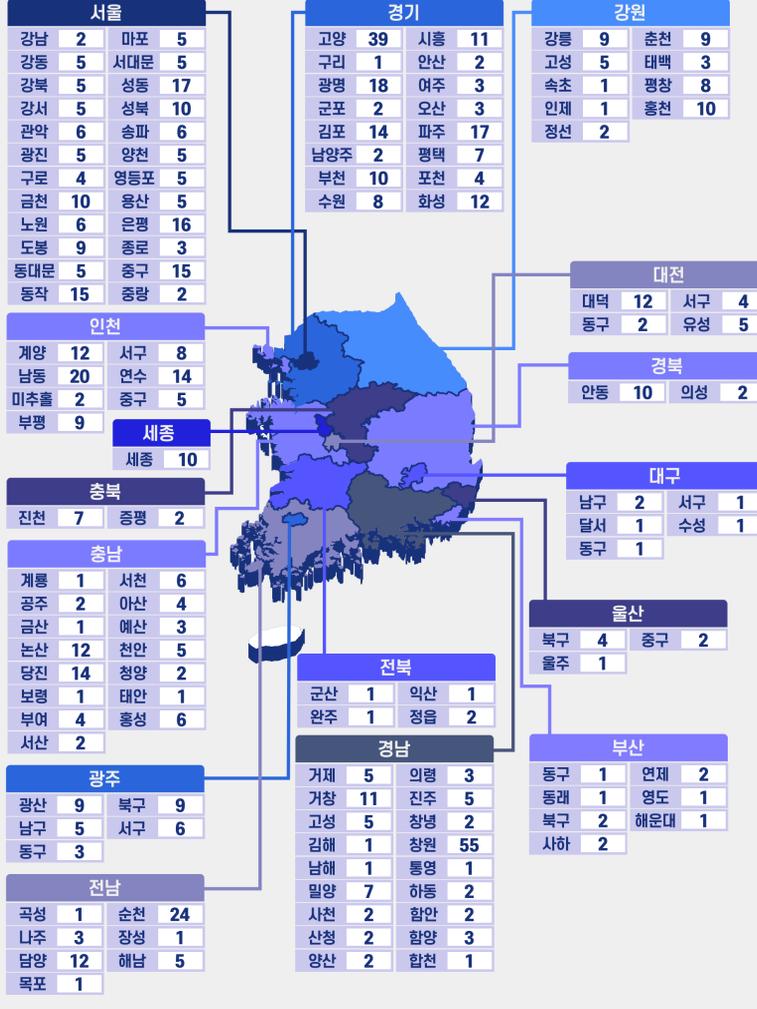
[2017.7 ~ 현재]

'17년 12월 83개, '19년 6월 214개, '20년 6월 626개, '21년 6월 777개 읍면동에서 실시

1·2단계와 3단계 비교

구분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1·2단계 ('13.7월~'17.6월)	3단계 ('17.7월~현재)
주민자치회의 권한	협의업무, 수탁업무, 주민자치업무의 수행	주민자치업무, 협의업무, 수탁업무의 수행, 운영세칙 제정, 자치계획 수립 및 집행, 주민총회 개최
주민자치회의 기능	1.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 밀접 관련 업무에 대한 협의 2.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주민자치업무	1. 주민총회 개최, 자치(의정)계획 수립, 마을축제, 공동체 형성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 관련 업무에 대한 협의업무 3.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업무의 수탁 처리
주민자치회의 기관	주민자치회 위원 분과위원회(위원들로 구성) 없음	주민자치회 위원 분과위원회(위원과 참여 희망 주민으로 구성) 분회(지회) 및 사무국 설치
위원선정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위원공개모집과 추천 (읍면동장, 이통장협의회, 지역대표연합단체) → 주민자치위원 위촉(읍면동장)	위원선정위원회 폐지 위원공개모집 원칙 → 주민자치교육이수(6시간 이상) → 공개추천 →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시군구청장)
공무원 파견	없음	주민자치분야 전담인력, 전문직위 또는 임기제 공무원
읍면동장의 의견제출권	있음	없음

전국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읍면동 현황 (21년 6월, 총 777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간 제도 비교

구분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위상	읍면동 민관협치기구 주민자치 대표기구 및 협의·실행기구	읍·면·동 장의 자문기구
법적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9조 시군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별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읍·면·동 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시군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위촉권자	시장, 군수, 구청장	읍·면·동장
기능	주민자치사무, 협의사무, 수탁사무, 자치계획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 심의(문화·복지·편익기능 등)
조직	일반 주민참여 가능한 개방된 분과위원회, 지역기반 분회 조직, 타 주민자치회와 협의체 구성	분과위원회의 주민개방성 없음
재정	자체재원(회비, 수익, 위탁사업 수입, 사용자 등), 주민세, 주민참여예산제 활용 등 다양	읍·면·동사무소 지원 외에 별도 재원이 거의 없음(주민자치센터 보조금)
자치단체와의 관계	자치단체와 협력적 관계	읍·면·동 주도로 운영

#주민자치회 #읍면동 #주민총회

#마을계획 #자치계획

[자료출처]

최인수, 전대욱(2020),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내용문의]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033-769-9850, ischoi@krla.re.kr)